

	국회의원 홍 희 덕	보도자료	
		담당	보좌관 이호연 010-5196-6333
		날짜	2010년 7월 7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6호 전화 02)784-6183 / 전송 02)788-3326 홈페이지 www.okhong.net / 대표메일 okhong@assembly.go.kr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인데 OECD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10단계 꺾충?

고용노동부, OECD에 “한국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휴수당 받는다.”서한 보내

- 하루아침에 OECD 한국의 최저임금 월 20만 5천500원 인상
- 실제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5.2%만 주휴수당 받아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 현실화 외면하고 OECD 통계 조작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이야기할 자격 없다.”

1. 2012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편법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1위에서 11위로 수직상승했다.

2011년 2월 까지도 OECD는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09년 중위수 임금대비 최저임금)이 터키가 71.3%로 가장 높고, 프랑스 60.1%, 뉴질랜드 59.4% 등의 순이며, 우리나라는 40.7로 OECD 24개국 중 21번째 수준이라

고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2월 8일 고용노동부는 OECD에 “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유급주휴제도¹⁾가 있음에 따라 ... (중략) ...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 44시간 (월22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 결과 OECD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천원에서 90만4천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 8860원으로 인상했다. 그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하루아침에 OECD 24개국 중 21위에서 11위로 둔갑한 것이다.

(OECD, <http://stats.oecd.org/index.aspx>, Minimum wages at current prices in NCU)

2.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 중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과 노동부는 모든 최저임금 노동자가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아 주 8시간 기준 시급 4320원으로 월 92만 8860원을 받는 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에 자료에 따르면 152만명의 시간제 근로자 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유급주휴수당>뿐 아니라 다른 복지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010년 3월				2011년 3월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6.1	11.6	5.7	6.1	8.5	11.2	6.2	5.2

시간제 근로자의 복지 수혜율, % (통계청 2011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1)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인데, 적어도 1주 중에 1일의 휴일을 갖는다는 것이다.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반면 근로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를 어길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지난 6월 28일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과 참여연대가 신림, 관악, 종로, 을지로, 동대문 등 서울지역 101곳의 편의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생의 7.1%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영국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조작하여 인용하였다가 홍희덕 의원의 지적으로 수정을 한바있다.(2009노동 분석지표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4.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외면하고 OECD 통계나 조작하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자격 없다.”며 “이래놓고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수준은 OECD 10위.’ 라고 자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주휴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OECD 통계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로서 자격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OECD에 통계 조작해 달라고 구걸할 시간에 최저임금 현실화에 신경써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홍 희 덕

첨부1. 고용노동부가 OECD에 송신한 서한, OECD의 회신(영문,국문)

첨부2. 2010년최저임금위원회 수치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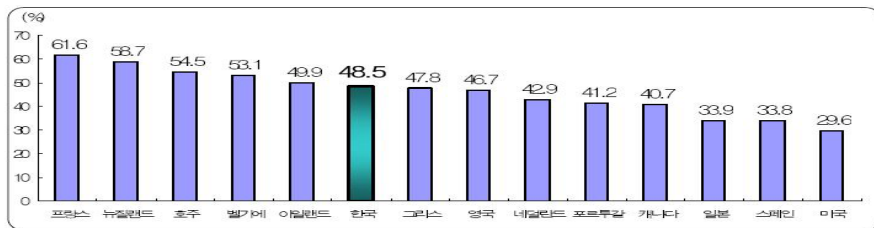
3.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010년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영국저임금위원회 자료를 조작하여 인용하였다가 홍희덕 의원의 지적으로 수정을 한바있다.(2009노동 분석지표 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Full-time 성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월 중위수 임금총액 기준)

(%)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한국	그리스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캐나다	일본	스페인	미국
61.6	58.7	54.5	53.1	49.9	48.5	47.8	46.7	42.9	41.2	40.7	33.9	33.8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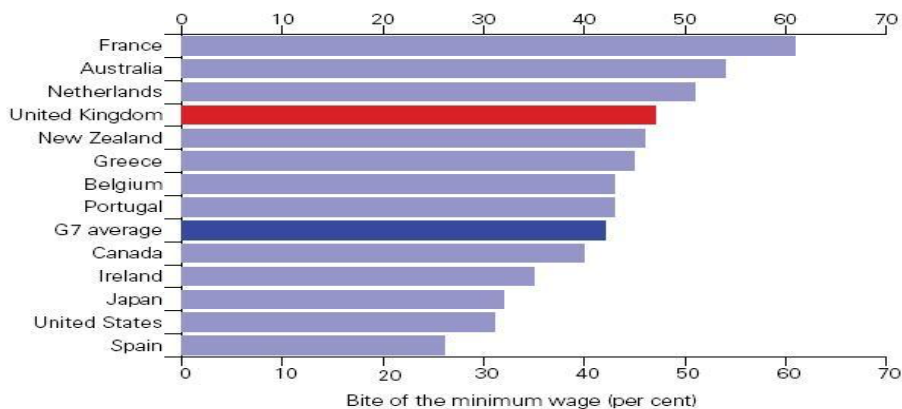
※ 한국은 풀타임, 파트타임 등 15세 이상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급 주휴임금제를 반영한 결과임.



자료 : U.K., The National Minimum Wage : Low Pay Commission Report 2009(OECD 소독구조DB),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 자료, 2007. 6~8월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 2009.06. 최저임금위원회> p17

Figure A5.1 Adult Minimum Wages Relative to Median Earnings, by Country^{ab}, 2008



Source: Government evidence to the LPC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National Minimum Wage, December 2008. (BERR, 2009f)

<영국 저임금 위원회 REPORT.원문 2009>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2009년 발간한 <최저임금 심위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지표>에서 영국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하며,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지 않고 높은 편이라고 주장. 하지만 영국 저임금위원회 report에는 한국 지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자료를 삽입하여 발표. 하지만 삽입한 한국수치는 제시된 타 국가 수치와 측정 기준이 상이해 문제가됨. (OECD기준 한국은 39%미만.2010)